

사택관리 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2.03.0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속한 사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입주자격)

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순에 따른다.

1.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타· 시도 지역을 생활연고지로 하고 홍성군 지역에 주택이 없는 자
2. 학교 제반업무 수행상 사택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 (입주자의 임무)

사택에 입주하는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시설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
제4조 (사택의 주관)

사택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19.05.22., 2022.03.04.>

제2장 입 주

제5조(입주자의 선정) 교직원으로 임명된 자 중에서 사택입주를 원하는 자는 입주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입주) 입주자는 입주허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될 때에는 입주 연기허가원(별지서식 제2호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관 리

제7조(관리)

사택은 입주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입주자의 관리 의무등)

사택을 사용하는 교직원은 사택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1.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
2.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
3. 청결유지
4. 각종 공과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·공과금의 성실한 납부
(단, 사택의 사용이 공무로 사용 할 경우 대학에서 각종 세금·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.)

제9조 (사고보고)

입주자는 사용 중 건물 및 기타 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총무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제10조 (손상복구)

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, 기타 시설을 손상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총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제11조(공과금 부담) 사택거주 중 사택의 기본시설 비용은 학교예산에 계상하고 일반유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상 사용할 경우 학교예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4장 퇴 거

제12조 (퇴거)

다음 각 호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퇴거를 연기할 수 있다.

1. 본교에서 퇴직하였을 때
2. 입주자가 사망하였을 때
3. 본교에서 건물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
4.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

다만, 사정에 따라 연기 입주할 수 있다

제13조 (시설변동)

퇴거자는 거주 중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증·개축한 부분이라도 시설에 부착된 것을 철거하지 못한다.

제14조 (점검)

사택관리 담당자는 퇴거 시 그 건물 및 시설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

야 하며, 특히 계량기의 지침상태를 점검기록 유지하고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15조 (대여금지)

입주자는 사전에 본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 (시행세칙)

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(2017.11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입 주 연 기 허 가 원

1. 건 물 명 :
2. 호 실 :
3. 당초기간 :
- 연기기간 :

상기와 같이 입주기간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0 년 월 일

신 청 인 소 속 :
 직 급 :
 성 명 :

(인)